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건강검진 제도 본연의 취지인 검진과 치료 연계를 위해 일반건강검진 후 추가 진료와 검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기한을 연장하고,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24.12.3.)의 후속조치로써 조산정도에 따른 발달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에 따라 이른둥이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간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건강보험 부담청구 등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개선하는 한편

「약사법」(법률 제19359호, 2024. 4. 19 시행),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7772호, 2021. 6. 30 시행) 개정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변경

- 2026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709”에서 “719”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208.4원”에서 “211.5원”
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44조)

나. 일반건강검진 추가 진료·검사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기한을 ^{현행}다음
연도 1월 31일에서 ^{개정}다음 연도 3월 31일로 연장(안 별표2 제3호 타목)

다.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을 생후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
로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차등적용 기준 마련(안 별표2 제3호 하목)

라. 건강보험 부담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지급액을 부패
방지권익위법에 맞춰 개선(안 별표6)

마. 「약사법」(법률 제19359호), 「건보법」(법률 제17772호) 개정을 반영
하여 인용조문 수정 정비(안 별표4의2, 안 별표7 제2호라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709”을 “719”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8.4”를 “211.5”로 한다.

별표 2의 제3호타목1) 중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산아(早産兒)와 저체중 출생아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1) 조산아가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

2) 저체중 출생아가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

별표 4의2 제1호가목 중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7”을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11”으로, “법 제94조제1항제5호의2”을 “법 제94조제1항제5호의4”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라목 중 “법 제96조의3”을 “법 제96조의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별표2 제3호 타목 및 하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 또는 검사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2 제3호타목1)의 개정규정은 2025년에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조산아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태어난지 5년이 지난 조산아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해서는 별표2 제3호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75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경우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가목1)가)(2), 같은 목 2)가)(2), 같은 목 2)나) 및 같은 목 3)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산아(早産兒) 및 저체중 출생아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 1) 조산아가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
- 2) 저체중 출생아가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u>709</u> 로 한다.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 ----- ----- <u>719</u> -----.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u>208.4</u> 원으로 한다.	② ----- ----- <u>211.5</u> -----.

[별표 6]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

징 수 금	포 상 금
2천원 이상 3만4천원 이하	1만원
3만4천원 초과 1억원 이하	징수금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 징수금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 징수금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 징수금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 징수금의 4%. 다만, 3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30억원으로 한다.

비고

1. "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702